

##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삼정회계법인  
배홍기 부대표

### I. 연구의 배경

#### 1.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도입배경

세계2차 대전 이후부터 DR 콩고와 그 주변국에서는 극단적인 폭력과 성폭행에 기반을 둔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는 주 원인 중 하나를 콜탄(*Columbite-tantalite*), 석석(*Cassiterite*), 철망간증석(*Wolframite*), 금 등 광물의 비정상적 채굴과 유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광물은 자동차·휴대폰·PC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며, 분쟁지역의 반군세력은 이 광물들의 유통경로를 장악한 뒤,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광물을 거래해 얻은 수익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민간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광물을 채굴하거나 살인 등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탄탈입니다. 탄탈은 보통 콩고산 콜탄이라는 원석에서 뽑아냅니다. 콜탄은 콜롬보와 탄탈이 함유된 광석인데, 이를 제련하여 탄탈을 뽑아냅니다. 전세계 콜탄 공급의 80%가 콩고산입니다. 그런데 콩고 정부가 채굴하는 콜탄보다 투치족 등 반군세력이 르완다 출신 후투족 포로 등을 강제 동원하여 채굴한 광석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반군은 콜탄을 팔아서 번 돈으로 무기를 구입한 뒤, 이

무기를 ‘와토토’라고 불리는 콩고 반군 소년병들에게 지급합니다. 반군들은 심지어 10세 미만 어린 아이까지 ‘와토토’로 끌어들인 뒤, 이들에게 마약을 투여하며 전쟁에 투입합니다. 세계 인권 단체는 콩고 지역에서 나오는 탄탈을 강제 노동으로 채취한 ‘블러드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분쟁 지역 광물을 규제하려는 이유도 인종 학살, 노예 노동으로 이어지는 반군의 내전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NGO들은 기업이 분쟁지역 광물에 대한 사용 여부를 공개하여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캠페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7월 분쟁광물 조항(*section 1502*)이 포함된 *Dodd-Frank*의 “금융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sup>1</sup>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8월 22일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2.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개요

*Dodd-Frank*의 “금융규제개혁과 소비자 보호법”은 금융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며, 동 법안에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사용 여부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Section 150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기업: 미국 상장기업
- 규제대상 국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인근 9개 국가
- 규제대상 광물: 주석광(*Cassiterite*), 콜탄(*Columbite-tantalite*), 철망간중석(*Wolframite*), 금과 이 광물의 파생물인 주석, 텅스텐, 탄탈륨 (“3TG”)
- 공시 내용: 분쟁광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Specified Disclosure Report*(“SD 보고서”)를 통해 공시

규제대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의 생산비중과 광물 별 수요산업, 주요용도는 다음의 [표 F2-1]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sup>1</sup>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2010년에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으로,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법안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표 I-2-1] 규제 대상 분쟁광물 및 수요 산업

금속(*)	수요 산업	주요 용도	산업 광물	DRC 생산 비중(%)
주석 (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li> <li>자동차</li> <li>공업기계</li> <li>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이프 및 회로 연결땀납</li> <li>주석 도금 철</li> <li>합금석(청동, 황동, 백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석광</li> </ul>	5%
탄탈륨 (Tantal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li> <li>의료기계</li> <li>공업기계</li> <li>항공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전자 산업의 축전기</li> <li>조정 공구</li> <li>전투기 부품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콜탄(콜럼브 석-탈탄석계)</li> </ul>	15-20%
텅스텐 (Tungs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li> <li>조명</li> <li>공업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속선</li> <li>전극</li> <li>전기 접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망간 중석</li> </ul>	1%
금 (Go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석</li> <li>전자</li> <li>항공우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석</li> <li>전기 도금</li> <li>IC 배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다른 형태의 광물</li> </ul>	0.5-2%

(자료 출처: KPMG US (2012.3.) Conflict minerals: Provision of Dodd-Frank)

(\*) 분쟁광물 원석에서 파생되는 금속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분쟁광물의 규제 대상 금속을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3TG”)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분쟁광물에서 파생되는 금속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I. 연구의 필요성

분쟁광물 규제는 휴대폰,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 가전 및 항공기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美 상장기업뿐 아니라 상장기업의 공급업체 등 하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액 상위 15개 품목이 총 대미 수출액에서 7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이 분쟁광물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II-1] 2011대미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품목명	수출액		
		금액	증가율	비중*
1	무선통신기기	9,238	1	16.40%
2	자동차	8,937	32.6	15.90%
3	자동차부품	5,018	21.8	8.90%
4	반도체	2,726	△25.1	4.80%
5	석유제품	2,588	△25.0	4.80%
6	철강관 및 철강선	1,714	41.3	3%
7	고무제품	1,655	27.4	2.90%
8	컴퓨터	1,482	8.7	2.60%
9	섬유 및 화학기계	1,280	△2.3	2.30%
10	철강관	1,250	69.4	2.20%
11	원동기 및 펌프	1,149	104.1	2%
12	기초유분	1,133	59.1	2%
13	냉장고	1,005	15.7	1.80%
14	플라스틱 제품	858	17.5	1.50%
15	항공기 및 부품	813	-23.5	1.40%

\* 2011년 대미 수출 총액 : 562.1억불(2010년 대비 12.8%↑)

따라서 미국 내 전자·자동차·항공·방위산업 업체에 공급하는 한국의 반도체, LCD, 배터리, 전자부품 제조 기업은 광물 원산지를 밝혀야 하며 분쟁 지역에서 생산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애플, IBM, 델, HP 등 25개 기업들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LG디스플레이 등에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2012년 초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쟁 광물 규제 움직임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호주, 캐나다 등이 동참하여 분쟁광물 가이드라인 또는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럽의 인권 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블러드 다이아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었는데, 이번 분쟁 광물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관련된 제품의 유통을 막아야 분쟁 광물이 근절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유럽연합(EU) 내에서 공론화 할 기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하에 세계 각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니·토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부품 협력사들과 연계하여 분쟁 지역 광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규제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광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미국 상장기업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자가상표(*private-label*) 제품 또는 *OEM* 제품을 판매하는 상장 소매기업: 단, 다른 업체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는 소매기업은 보고 의무가 없음
- 상장된 미국 기업의 공급사슬 내에 종사하는 비상장 기업 또는 외국기업: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sup>2</sup>에 직접 보고하는 의무는 없으나 자신의 고객들에게는 서류를 제공해야 함
- 일반적인 유통·판매업체(*retailers*)는 보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급사슬 내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미국 *SEC* 상장 국내 기업은 아래 표와 같이 포스코와 *LG*디스플레이 등 소수 기업이나, 미국 상장 기업의 공급사슬내에 있는 한국기업들까지 고려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대미 수출 타격과 기업이미지 추락 등의 사전 방지가 요구됩니다.

[표 II-2] 미국 상장 한국기업

회사	상품	서비스
KB금융지주	신용카드	은행업
한국전력공사	발전설비	전력공급
KT	한국통신	통신 서비스
LG 디스플레이	LCD디스플레이패널	
포스코	철강	
신한금융지주	신용카드, 금괴	은행업
SK 텔레콤	전기통신	통신 서비스
우리금융지주	신용카드	은행업

<sup>2</sup>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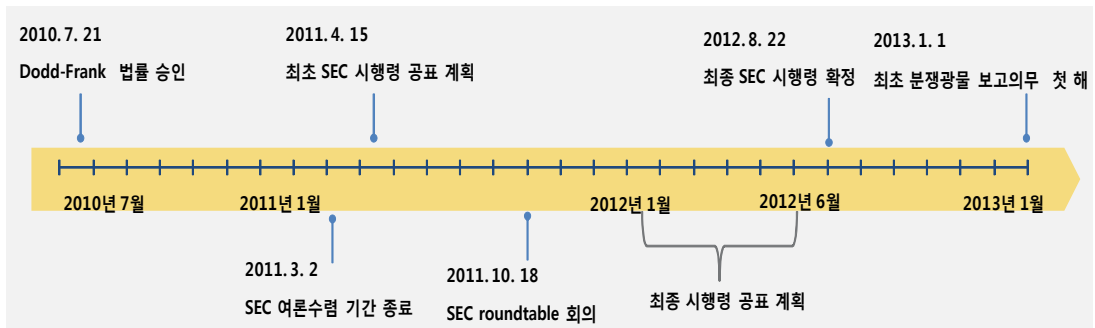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감독관청으로 미국 증권업무를 감독하는 최고 기구로써, 단순한 행정기관에 그치지 않고 연방증권법을 시행하기 위한 제규칙을 제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다.

### III.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도입 경과와 주요 내용

#### 1.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도입 경과

분쟁광물 규제 법안의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발표되기까지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발과 법안 시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최초 법률제안으로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2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림 III-1]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도입경과



2008년에 최초로 분쟁광물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2009년에 Christopher Dodd 상원 은행위원장과 Birney Frank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2009년 12월에 하원을 통과, 2010년 5월에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1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분쟁광물 조항(section 1502)을 포함한 Dodd-Frank 금융규제 개혁법안에 서명하여 승인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분쟁광물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시행령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을 가졌으며, 최종 법안의 발표는 법안법안제정부터 270일이 되는 2011년 4월 15일로 예정되었으나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안의 적용범위, 공급사슬 파악의 어려움, 감사기준의 불명확성 등 법안 시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 회에 걸쳐 지연되어 오다 지난 8월 22일 최종 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으며, 9월 12일 연방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최종 시행령에 따라 규제 법안은 2013년부터 적용되며 2014년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의 사용여부에 대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법안의 주요내용

분쟁광물 규제법안에 따르면, 미국상장기업은 DR콩고, 콩고공화국, 수단, 르완다,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브룬디 10개국에서 생산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를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공급사슬 실사 수행방법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독립된 민간부문의 감사결과와 분쟁광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 III-2]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최초 적용 기간 및 공시기간



보고대상 기업은 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국기업(Form-10K<sup>3</sup>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Form-20F<sup>3</sup>를 SEC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업)도 해당됩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미국상장기업의 경우 연차보고서(Form-10K)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규모에 따라 75 일 혹은 90 일)이내이고, 외국기업(Form-20F 제출 대상)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2012년도까지는 6개월) 이내인 것을 고려하여, 기업의 공시의무를 분산하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분쟁광물 보고서의 공시기한은 1역년(calendar year)을 대상으로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sup>3</sup> Form-10K, Form-20F

미국 증권거래법 Section 13(a) or 15(d)에 의한 annual or transition report form 으로 Form-10K는 미국상장법인의 보고서 제출양식이고, Form-20F는 미국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보고서 제출양식이다.

### 3. 법안의 세부내용

분쟁광물규제 법안의 단계별 절차 및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III-3-1]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절차 및 의무사항

구분	의무 사항
Step 1. 규제대상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대상 회사: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회사</li> <li>•규제대상 광물: 주식광, 콜탄, 철망간중석과 해당 광물의 파생물인 주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3TG”)</li> <li>•규제요건: 분쟁광물이 제조자 또는 제조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제품생산 또는 기능상으로 필수적인 경우</li> </ul>
Step 2.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쟁광물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확인(절대적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지 않음) 다른 분쟁광물의 원산지가 판명되고 소량의 금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산지 판단을 하였다고 인정</li> <li>•합리적인 설계와 선의의 추정 (분쟁광물 사용하는 모든 공급업체로부터의 진술이 필요한 것은 아님)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OECD 가이드에는 EICC 제련소 인증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li> </ul>
Step 3.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실사체계를 적용하여 분쟁광물과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 OECD의 공급사슬 실사 가이드라인이 적용 가능함</li> <li>• 재활용되거나 스크랩을 원천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도 실사를 수행</li> <li>• 재활용 또는 스크랩에 대한 실사기준은 금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OECD 실사 체계가 존재</li> </ul>

#### (1) 분쟁광물의 정의

분쟁광물 규제 초안에서는 “분쟁광물”을 미 국무부가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주식광, 콜탄, 철망간 중석과 해당 광물의 파생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은 공시 및 보고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종시행령에 특정 파생물을 명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법안에서 “분쟁광물”은 미 국무부가 추가적으로 반군세력의 재정에 이익을 주는 광물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주식광, 콜탄, 철망간 중석과 해당 광물의 파생물인 주식, 탄탈륨, 텅스텐 및 금(“3TG”)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의 정의를 무장세력의 재정적 이익에 도움을 준 광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제안에 불구하고, 최종 법안은 “분쟁광물”의 유형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을 주식광, 콜탄, 철망간 중석과 해당 광물의 파생물 그리고 무장세력의 재정적 이익에 관계없이 분쟁지역에서 재정적 분쟁을 야기하는 다른 광물들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장세력의 재정적 이익에 도움을 주지 않은 해당 지역 광물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DRC conflict free”라 기술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 규제대상 여부 판단

분쟁광물규제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된 기업(증권거래법 13(a) 또는 15(d)<sup>4</sup>)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가지는 기업)으로, 미국 내국기업, 외국기업 및 소규모기업을 포함합니다. 즉, 최종시행령에서는 기업의 크기나 내/외국기업 여부에 따른 적용상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소규모 기업의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동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감소시킬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소규모 기업의 분쟁광물 정보에 의존하는 상위 대규모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분쟁광물의 원산지가 분쟁지역인지 결정할 수 없거나 분쟁지역에서 조달된 분쟁광물이 무장세력의 재정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기업은 그들의 제품을 “DRC conflict undeterminable”으로 기술하여 공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기업이 규제법 시행 후 2년까지 동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하며, 소규모 기업에 한하여 동 기간을 2년간 연장함에 따라 4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규제대상 여부 판단은 SEC 상장 기업이 ①제조사 또는 제조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②분쟁광물이 ③제조 또는 제조계약에 기능상으로 또는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sup>4</sup> 증권거래법 13(a), 15(d)

미국증권거래법 조항으로 13(a)는 연차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15(d)는 보충 정보와 주식기재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① 제조자 또는 제조계약을 맺은 회사**

분쟁광물 법안은 적용 대상 기업을 제조기업 또는 제조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조’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수준의 의미하며, 최종시행령에서도 특정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분쟁광물을 채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와 관련이 되어있지 않다면 광물채굴 또는 채굴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분쟁광물의 채굴은 “제조”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분쟁광물 법안은 타인과 제품제조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제품제조계약”을 체결한 기업(발주자)이 제조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제조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포함되는 광물, 부품,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분쟁광물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 제품의 제조에 관련 없이 제조업체와 계약 조건을 지정하거나 협상하는 계약(예를 들어 훈련 또는 기술 지원, 가격, 보험, 배상,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또는 제품에 관한 협상. 단,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제품의 제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 제3자가 제조한 일반물품에 자가상표, 브랜드, 로고, 라벨 등을 부착하는 기업
- 제3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서비스, 유지보수만을 하는 기업

**② 분쟁광물**

분쟁광물 법안의 적용대상 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석광, 콜탄, 철망간중석과 해당 광물의 파생물인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3TG”)
- 미국무장관에 의해 콩고와 인접국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광물과 그 파생물 (아직 추가로 지정된 광물은 없음)

### ③ 제조 또는 제조계약에 기능상으로 또는 제품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분쟁광물법안은 법의 적용 조건으로 제품에 포함된 분쟁광물이 제품의 제조 또는 제조계약에 있어 “기능상 필수적” 또는 “생산에 필수적”일 때로 규정 하였습니다. 최종시행령에서도 어떤 경우에 “기능상 필수적” 또는 “생산에 필수적”인지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여러 상황들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분쟁광물이 “기능에 필수적인지”를 결정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합니다.

- (a) 분쟁광물이 제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제품 생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제품 또는 제품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었는지
- (b)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제품의 기능, 용도, 목적 등에 분쟁광물이 필수적인지
- (c) 최초목적이 장식이나 꾸밈이었던지 여부에 따라 분쟁광물이 장식이나 꾸밈으로 사용되었는지

해당 사실과 상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분쟁광물이 “기능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쟁광물이 “생산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은 분쟁광물이 제품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와 제품의 생산과정(제품의 구성요소의 생산과정 포함)에서 분쟁광물이 의도적으로 첨가되는지 여부와 분쟁광물이 제품의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종시행령에서는 아래의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 • 제품에 포함된 분쟁광물

분쟁광물 법안에서는 오직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분쟁광물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되었으나 최종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제조과정에서 사라졌거나 촉매로 사용된) 분쟁광물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의도적으로 첨가된 광물

분쟁광물 법안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제품은 분쟁광물이 제조과정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은 직접적으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분쟁광물이 구성물 등 타사의 제조로 인하여 분쟁광물이 의도적으로 제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 **분쟁광물이 “기능상 필수적”인지 여부**

분쟁광물이 제품의 기능상 필수적인지 여부를 결정 할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능, 용도, 목적 보다는 제품에 기대되는 다양한 기능, 용도, 목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전화기능 이외에도 인터넷, 음악청취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만약 분쟁광물이 이러한 복합적 기능들에 사용된다면 분쟁광물이 제품의 기능에 필수적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분쟁광물이 사용된 제품의 본래적 목적이나 기능(ex. 장식이나 꾸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귀걸이의 도금에 사용되었다면, 귀걸이의 본래적 목적이 꾸밈에 있으므로, 금은 귀걸이의 기능상 필수적인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분쟁광물이 “생산에 필수적”인지 여부**

분쟁광물이 “생산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결정 할 때 고려될 요소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분쟁광물이 최종제품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입니다. 촉매제로 사용되었거나 제조과정에서 없어져 최종제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광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나 장비 등에 포함된 분쟁광물도 고려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쟁광물이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나 기계에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이는 분쟁광물이 제조에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나 기계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나 전력선(power cable)과 같이 제품생산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부속물에 포함된 분쟁광물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량(de minimis)의 분쟁광물이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

분쟁광물 법안은 제품에 포함된 분쟁광물의 무게, 가격에 관계없이 분쟁광물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제품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의도가 분쟁광물이 포함된 양이나 가격적인 면 보다는 분쟁광물이 의도적으로 첨가되었는지 여부가 법안의 도입목적에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2)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추적 (RCOI: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미국 증권위원회에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공시의무자로 판단되는 경우 기업은 다음 단계로서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판단(RCOI: 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을 통해서 실사(due diligence) 수행여부와 분쟁광물 보고서(Conflict Minerals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Report; CM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① 규제법안 시행 전 채굴 또는 정제된 분쟁광물

분쟁광물 규제법안은 저장된(stockpiled) 광물과 이와 관련된 제품을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1월 31일 이전에 제련된 주석원광(cassiterite), 콜탄(coltan), 철망간중석(wolframite), 금은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2013년 1월 31일 이전 분쟁지역 밖에서 생산·채굴된 광물 원석과 파생 금속물도 보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의 취지는 기존에 비축된 광물이 무장세력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는 있으나, 이미 제련이나 정제된 이후의 분쟁광물은 더 이상 무장그룹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② 분쟁광물이 DR콩고와 인접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과 결과의 공시

분쟁광물 규제법안에 따르면,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분쟁광물의 원산지가 DR콩고 및 인접국가인지 여부를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분쟁광물 규제법안은 원산지 증명에 대하여 절대적 확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 제품, 공급 업체와의 관계에 따라서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정의하지 않았으나, 최종시행령에서는 공시의무기업이 사용한 분쟁광물이 규제 대상국가에서 조달된 것인지, 재활용 또는 스크랩을 활용한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절차를 설계하도록 제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합리성과 선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절차의 설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 방법을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분쟁광물을 가공하는 업체로부터 분쟁광물이 규제대상국가에서 조달된 것이 아니거나 재활용 또는 스크랩을 활용한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확인서를 입수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원산지 확인의 요구사항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직접적으로 제련소로부터 획득될 수 있고, 또는 직접적인 공급업체로부터 획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의무기업은 동 확인서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

니다. 분쟁광물을 가공하는 제련소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인정된 산업단체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서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기업의 분쟁광물 조달 정책은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 방법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SD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규제법안은 원산지 추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선의의 추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모든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판단근거를 요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품에 포함된 대부분의 분쟁광물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소량의 금만이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분쟁국가의 광물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공시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원산지 확인 판단 결과에 따라 실사 수행여부와 수행방법이 결정되지만, 합리적인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OCED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에 따른 실사수행 결정과 공시사항 범위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광물과 파생 금속물을 재활용 또는 스크랩을 활용하여 획득하였다는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 근거에 대하여 간단한 내용설명과 수행한 절차를 기술한 SD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분쟁광물 보고의무는 종료됩니다.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재활용 또는 스크랩을 활용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라면, 원산지가 분쟁지역 국가인지 합리적 수준으로 판별해야 합니다. 합리적 수준의 판단 결과 해당 광물이 분쟁지역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닐 경우에는 원산지 추적과 관련된 판단근거와 회사가 수행한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한 SD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보고의무는 종료됩니다.

반면,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재활용 또는 스크랩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추적의 결과 광물의 원산지 판단이 불가하거나 분쟁지역이 원산지인 경우, 실사를 수행하고 SD보고서와 별첨으로 첨부하는 CM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판단이 불가능하여 실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광물의 원산지가 분쟁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CM보고서의 발행의무는 없으며 SD보고서에 실사 방법과 해당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의무는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SD보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Conflict Minerals Disclosure”라는 주석으로 기재

되며,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간단한 설명과 회사에서 수행한 절차에 대하여 기재하고 분쟁광물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시내용은 링크를 통하여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3) 공급사슬 실사와 분쟁광물보고서 제출

#### ① 공급사슬 실사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수행한 이후에도 분쟁광물 관련 의무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로 분쟁광물 실사를 수행하고 분쟁광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 절차를 수행한 결과 분쟁광물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분쟁의심지역으로 판단되는 경우 분쟁광물의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실사방법 등이 기재된 CM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은 분쟁광물이 부분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스크랩을 원천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도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OECD 정의에 따르면 분쟁광물이 최종 소비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반품된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스크랩을 재사용 했을 경우 이를 재활용 또는 스크랩을 원천으로 하여 사용되었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공 처리된 것이나 다른 광물의 부산물은 재활용 금속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쟁광물 실사 수행 시에는 미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실사체계에 따라 분쟁광물의 원산지와 공급사슬에 대한 판단 및 분쟁광물이 재활용되거나 스크랩 자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실사 체계는 독립된 민간 부문의 감사가 기업의 실사체계를 구조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실행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실사 체계는 실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CM보고서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OECD의 “위험지역 분쟁 광물 공급사슬 실사체계”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기준을 만족하고 시행령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실사체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OECD의 금 실사체계는 재활용 또는 스크랩에 대한 실사기준으로 미국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실사 체계입니다. 실사방법은 광물 별로 다른 실사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CM보고서에는 각 광물별로 다른 실사체계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표 III-3-2] 공급사슬 실사 원칙

실사기준
- 미국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실사체계 사용
- OECD 공급사슬 실사 가이드라인이 적용가능하나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음
- 재활용 또는 스크랩자원에 대해서도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실사체계를 적용하여 실사(금의 경우 유일하게 OECD 실사체계가 존재함)
- 각 광물별로 다른 실사체계 적용 가능. 단, CM보고서에 각 실사방법에 대한 설명 기술

### ② 분쟁광물보고서 제출

기업의 실사 결과, 제품에 사용된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비분쟁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재활용 또는 스크랩을 원천으로 한 경우에는 2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SD 보고서의 제출과 관련 정보 공개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때 기업이 수행한 실사와 관련된 내용과 결과를 SD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할 필요는 있으나 해당 내용을 분CM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사 결과, 제품에 조금이라도 분쟁지역 생산 광물과 파생 금속물이 제품에 포함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반드시 CM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시행령은 기업의 제품이 “DRC conflict free”가 아니면, 분쟁광물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설명, 분쟁광물 처리시설, 원산지 국가, 해당광물의 광산 또는 구체적인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노력을 CM보고서에 포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쟁광물 처리시설은 제련소나 정제공장을 의미 합니다. CM보고서에는 기업의 실사방법이 합리적으로 인정된 실사체계에 부응 하며, 기업의 실사 과정과 그에 대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독립된 민간부문의 감사의견 또는 결론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광물 법안은 원산지 판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하여 최초 2년(소규모기업<sup>5</sup> 4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광물 보고서에 해당 제품을 “분쟁지역 생산 광물 포함여부 결정할 수 없음(DRC Conflict Free Undeterminable)”으로 기술 할 수 있습니다.

a. 분쟁광물에 대한 합리적인 원산지 판단 절차와 근거에 대하여 3단계까지 절차

<sup>5</sup> 소규모 회사의 기준: 시가총액 75백만불 이하이거나, 시가총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받은 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총액이 50백만불 이하인 경우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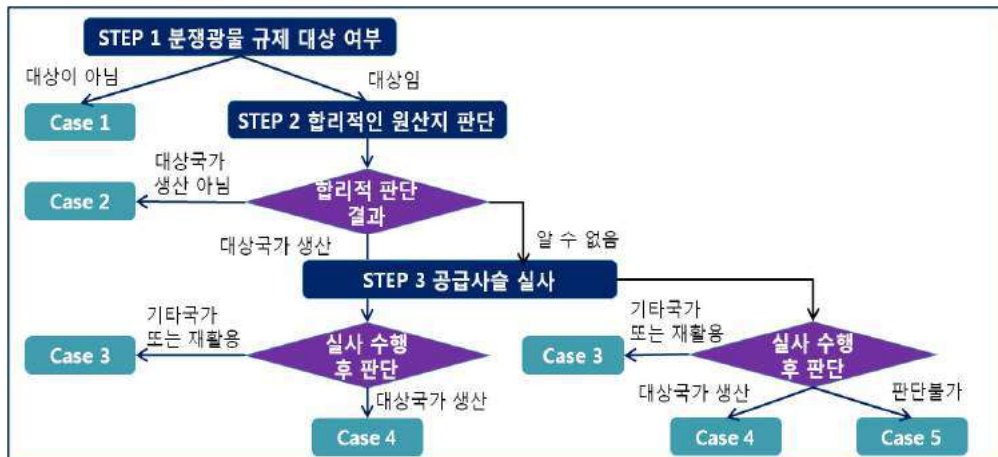
를 수행한 결과 분쟁광물이 콩고와 그 인접국에서 조달된 것으로 판단이 불가하거나;

- b. 3단계까지 절차를 수행한 결과, 분쟁광물이 콩고 및 그 인접국에서 조달되었거나, 재활용 또는 스크랩 자원을 원천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광물이 콩고와 그 인접국의 무장단체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익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DRC Conflict Undeterminable”로 공시하는 기업들은 분쟁광물보고서의 감사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행한 실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기재된 CM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광물이 포함되었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과 분쟁광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분쟁광물 보고서가 발행된 가장 최근의 기간 이후부터 취한 모든 실사절차, 분쟁광물 원산지, 분쟁광물 처리시설(제련소, 정제시설을 의미), 및 원산지의 확인을 위하여 수행한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3단계까지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분쟁광물이 직·간접적으로 무장단체에 자금을 융통시켜주거나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분쟁지역 생산 광물 포함이 의심됨(not found to be DRC Conflict free)”이라고 기술하여야 합니다.

[그림 III-3]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Flow chart



[표 III-3-3] Case별 실사범위와 보고서 기재사항

구 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SD 보고서	N/A	합리적 판단과정과 결과 기재	Case2 + 간략한 실사과정 기재	Case2 + 간략한 실사과정 기재	Case2 + 간략한 실사과정 기재
실사의 수행	N/A	N/A	수행	수행	수행
CM보고서	N/A	N/A	N/A	SD보고서의 별첨으로 실사 상세내역 기재	Case 4 + 의견은 “DRC Conflict Undeterminable ”
독립된 민간 감사	N/A	N/A	N/A	감사수행	N/A (특례 조항 기재)

### ㉓ 민간부문 감사

분쟁광물보고서에 대한 독립된 민간부문 감사는 미국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이하 “GAO”)<sup>6</sup>에 의해 만들어진 감사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GAO는 새로운 감사기준을 만들려는 의도가 없다고 언급하였으므로 GAGAS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sup>7</sup>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감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GAO에 의해 제정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독립성 기준에 규제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목표는 분쟁광물 보고서에 기업의 실사측정 방법이 미국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실사체계에 따라 설계되었고, 기업이 수행한 실사절차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 또는 결론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독립된 민간부문의 감사는 CM보고서 내용 전체에 적용된다기 보다는 해당 기업의 실사가 OECD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사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sup>6</sup> 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 회계감사원)

미국의회 소속의 감사기구로 정부기관 등에 대한 감사, 정부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평가, 정부회계기준 및 정부감사기준의 제정과 공포 등이 주요 기능이다.

<sup>7</sup> GAGAS(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미국 정부 감사 기준  
미국정부감사기준은 IIA 내부감사기준과 유사한 틀을 가지며 “Yellow Book” 이라 불린다.

[표 III-3-4] 민간부문 감사목표

독립된 민간부문 감사목표
- 보고서의 기간에 대한 일치
- 미국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실사기준에 따라 설계 및 적용
- 실사 수행 절차의 정확성 및 효과성
- 분쟁광물 공급사슬 실사 결과의 정확성
- 보고서에 명시된 실사과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4) CM보고서의 공시 관련 사항

CM보고서는 SD보고서의 별첨형식으로 SEC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시대상 기간은 1역년(Calendar Year)으로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CM보고서를 익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첫 시행은 2013년이므로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기간의 보고서를 2014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다양한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거래처의 회계연도에 따라 여러 번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제조기업의 보고기간 산정은 투입일 기준이 아닌 완료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Case 1) 분쟁광물이 2018년 12월 30일에 기능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하여 투입되었고 2019년 1월 2일에 완성되었다면 2019년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Case 2) 제조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청을 받은 제조기업에서 2018년 12월 30일에 분쟁광물이 생산에 투입되어 제품을 완성을 하였다면, 해당 제품의 납기 지연으로 2019년 1월 2일에 발주 기업에 입고되었다 하더라도 발주 기업은 2018년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4. 분쟁광물 규정의 준수를 위한 실행상의 어려움

##### (1) 법률 해석상의 문제

2012년 8월 22일 SEC가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지침이 제공되었으나, 여전히 법률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공시의무기업이 결정하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a. 제조를 위한 계약 - 무엇이 유의적인 영향력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사의 정책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 b. 기능에 필수적 - 규제 대상인 3TG가 제품에 필수적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c. 제조에 필수적 - 극소량의 3TG가 제품에 남아있는 경우도 적용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관리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d. 분쟁광물 미사용 확인을 위한 기준 - 모든 공급업체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자체기준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 e. 원산지와 재활용 자원의 확인 -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확인서를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자체적인 정책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 (2)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과 실사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공급업체를 확인하고, 제품에 분쟁광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업에게 상당한 업무부담이 될 것 입니다. 공급업체가 제련소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서에 회신하도록 하는 것 또한 실행상의 어려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의 실사기준은 어떻게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산업별 협회가 이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IV. 분쟁광물규제 법안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쟁광물 규제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공사의무가 있는 美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법안이지만, 상장기업이 분쟁광물 사용 확인을 위해서는 공급업체에도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므로 미국의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국내의 제조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전자·자동차·항공·방위산업 업체에 공급하는 한국의 반도체, LCD, 배터리, 전자부품도 광물 원산지를 밝혀야 하며, 분쟁지역에서 생산한 광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분쟁광물규제 법안이 한국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광물의 수입 측면, 직·간접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분쟁광물 수입 측면

한국이 분쟁광물 규제대상 국가에서 수입하는 분쟁광물은 현재까지 미미하며, 규제가 시행되어도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IV-1-1] 분쟁광물 수입 현황

(kg, 천\$)

국가		2010		201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금	잠비아	-	-	-	-
	중앙아프리카	1	40	-	-
	탄자니아	-	-	-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상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이 규제대상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분쟁광물은 극히 소량의 금이며, 주석, 탄탈륨, 텅스텐은 규제 대상국 수입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규제 시행시 한국기업들은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련소 등 "Conflict-Free"한 광물의 공급처를 찾는 데 애로를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D램, 자동차용 배터리,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CPU), 휴대전화

**PART. 4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

안테나, 원자력발전기, 현미경과 디지털카메라, TV,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탄탈륨은 DR콩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 생산량의 15-20%로 높은 바, 규제 시행 시 탄탈륨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 IV-1-2] 주석 수입 현황** (kg, 천\$)

국가	2010년도		2011년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라오스	597	90,000	519	223,000
볼리비아	-	46	163	18,070
중국	1	60	4	10
일본	-	1	1	3
키르기스	-	3	-	-
미국	-	-	-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표 IV-1-3] 탄탈륨 수입 현황** (kg, 천\$)

국가	2010년도		2011년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볼리비아	594	7,398	99	1,700
중국	13	18	-	-
홍콩	15	24	-	-
미국	1	1	-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표 IV-1-4] 텅스텐 수입 현황** (kg, 천\$)

국가	2010년도		2011년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몽골	-	-	54	18,000
영국	-	-	3	-
캐나다	-	-	-	-
오스트리아	-	-	-	9
미국	2	16	-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표 IV-1-5] 금 수입 현황

(kg, 천\$)

국가	2010년도		2011년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홍콩	488,058	12,178	648,411	12,212
호주	374,721	9,573	342,281	6,983
일본	358,435	9,473	307,916	6,214
스위스	8,162	350	157,678	3,062
독일	279,966	7,595	78,283	1,592
남아프리카	-	-	20,530	450
중국	2,257	61	15,981	373
캐나다	5	2	13,522	303
싱가포르	18,020	489	9,243	233
미국	6,975	501	7,741	664
아랍에미리트	4,042	103	5,768	113
터키	3,043	81	1,900	40
리히텐슈타인	1,349	116	1,191	106
대만	1,744	64	1,130	33
가나	25	1	547	13
말레이시아	1	1	375	18
태국	153	7	165	4
이탈리아	-	-	142	5
필리핀	428	12	110	4
베트남	-	-	90	2
영국	58	7	69	5
말리	-	-	61	3
칠레	-	-	60	1
몽골	-	-	26	-
프랑스	-	-	3	-
중앙아프리카	40	1	-	-
카메룬	881	38	-	-
덴마크	3	12	-	-
기니	19	1	-	-
요르단	746	16	-	-
라이베리아	18	1	-	-
니카라과	1	-	-	-
페루	35	1	-	-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2.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

### (1) SEC 보고대상 국내 기업

SEC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주요 국내기업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기업들은 산업에 관계없이 분쟁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SD보고서를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미국상장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IV-2-1] SEC 보고대상 국내 기업

회사이름	상품	서비스
KB금융지주	신용카드	은행업
한국전력공사	발전설비	전력공급
KT	한국통신	통신 서비스
LG 디스플레이	LCD디스플레이패널	
POSCO	철강	
신한금융지주	신용카드, 금괴	은행업
SK 텔레콤	전기통신	통신 서비스
우리금융지주	신용카드	은행업

### (2) 미국 상장사의 공급사슬 내에 있는 기업

제품 생산업체들은 직접적으로 미국에 상장 되어있지 않아도 미국 상장사의 공급사슬 내에 있다면 중간단계 혹은 최종단계 업체에서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도 미국기업에 대한 KPMG US의 설문조사 결과 24%의 기업만이 분쟁광물 규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기업은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았으며 응답률이 낮아 실제 인지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IV-2-3] 설문 대상 기업수

구분	전자	반도체	기계	자동차부품	전지	비철금속
회원 기업 수	300	321	782	280	55	33
응답 기업 수(A)	56	2	12	5	6	3
인지 기업 수(B)	32	2	5	3	5	3
규제인지도(B/A)	57%	100%	42%	60%	83%	100%

(자료 출처: 지식경제부 분쟁광물 규제 대응 간담회(2012.3.27.) 자료)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 결과 미국 상장기업에 납품하는 기업과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받은 기업의 수가 응답기업 중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났으나, 현재까지의 대응수준은 관련 산업협회의 세미나와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인식제고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로부터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직접 요청 받은 국내기업에 원재료, 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IV-2-4] 미국 상장기업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수

구분	전자	반도체	기계	자동차부품	전지	비철금속
응답 기업 수(A)	56	2	12	5	6	3
수출 기업 수(B)	21	2	3	3	2	1
수출업체 비중(B/A)	38%	100%	25%	60%	33%	33%

(자료 출처: 지식경제부 분쟁광물 규제 대응 간담회(2012.3.27.) 자료)

[표 IV-2-5]<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고객사에서 요청 받은 기업 수 >

구분	전자	반도체	기계	자동차부품	전지	비철금속
응답 기업 수(A)	56	2	12	3	6	3
요청 기업 수(B)	20	2	2	3	2	2
요청기업 비중(B/A)	36%	100%	17%	100%	33%	67%

(자료 출처: 지식경제부 분쟁광물 규제 대응 간담회(2012.3.27.) 자료)

### 3. 산업 측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분쟁지역에서의 광물 수입의존도와 직접적인 분쟁 광물 보고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적은 편이나 분쟁광물이 TV나 휴대전화 등 생활 필수가전에서부터 미사일이나 항공기, 우주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업체들은 직접적으로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공시의무는 없지만, 중간단계 혹은 최종단계 업체로부터 해당 정보에 대한 요청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를 요청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리방안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영향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산업부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 산업

분쟁광물 중 탄탈륨은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콘덴서 제조용으로 거의 모든 전자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입니다. 따라서 분쟁광물 규제법안이 시행되면 LCD, 배터리, 전기부품 등을 미국 기업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예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 등 과 같은 대기업 이외에도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중소PCB 제조업체와 전자기계 및 전자부품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표 IV-3-1]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자산업 부문/기업**

제조 품목	해당 기업 명
PCB 제조기업	일진머티리얼즈, 인터플렉스, 에스아이플렉스, 영풍전자 산양전기, 뉴프렉스, 비에이치, SK플렉스, 플렉스컴,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등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기업	희성전자, 한국화낙, 오스람코리아, 서울전선, 세원이씨에스, 극동전선, 성지산업 등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엠이엠씨코리아, 피케이엘, 코아로직, 연호전자 등

그러나 이러한 국내기업들 중 대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쟁광물 규제법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광물의 이력 추적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반도체 산업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2011년 기준으로 2,726백만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제조과정에서 탄탈륨과 텅스텐이 필수적으로 첨가되기 때문에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기업의 대미 수출처와 수출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기업은 1차 공급업체 또는 2차 공급업체로서 미국의 분쟁광물 공시의무가 있는 거래처로부터 수출품목에 분쟁광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하기 위해 취한 절차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표 IV-3-2] 반도체 수출 기업

기업명	미국 상장여부	미국 판매처	수출 품목
SK 하이닉스	비상장	Dell	dram
		HP	dram
		Apple	낸드플래쉬
		Spansion	Slc 낸드플래쉬
삼성전자	비상장	Dell	반도체(memory)
동부 하이텍	비상장	Micrel	차량용 반도체
		Enpirion	전압조절칩(DC-DC 컨버터)
		Diode	소비가전용 데이터 컨버터
		Siliconworks	전력관리칩(PMIC)

**(3) 자동차부품 산업**

2011년 한국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50억 1800만 달러(약 5조6703억원)로 무선통신기기(92억3800만 달러), 자동차(89억37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컸습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제너럴 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빅3’와 주요 부품업체 등 미국 상장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부품에 포함된 광물의 원산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표 IV-3-3]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

기업명	미국 상장여부	미국 판매처	수출 품목
현대모비스	비상장	GM	ICS 및 LED 리어램프
		크라이슬러	
만도	비상장	GM	EPB(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EPS(전기모터 구동식 조향장치)
에스엘(주)	비상장	GM	LED 전조등, 전자식 변속레버(E-Shifter)
광진상공(주)	비상장	GM	자동차 Door System
평화정공(주)	비상장	GM	Door Moving System
성우하이텍(주)	비상장	GM	Bumper beam, Door Assembly 등
(주)인팩	비상장	GM	Control Cable, Actuator, Antenna
(주)지앤에스	비상장	GM	Exhaust Manifold, Dash Panel, Impact Beam Tie bar
(주)센트랄	비상장	GM	Transmission & Engine Parts
		Ford	
대원강업	비상장	GM	자동차용 스프링
		크라이슬러	

문제점은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분쟁광물의 실제 사용 여부를 떠나 해당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완성차 한 대에는 2만 5000개 안팎의 부품이 들어가는 등 부품 공급사슬 범위가 넓고 원자재 유통 경로가 복잡한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측은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의 광물 수입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더 큰 문제는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납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4) 철강 산업

국내 철강산업 중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부문은 주석도금강판 제조부문으로 이와 관련된 기업은 POSCO, 동부제철, TCC동양, 신화실업 등이 있습니다.

주석도금강판은 냉간압연강판에 주석을 도금한 제품으로 내식성과 가공성이 뛰어나 각종 음료캔 및 식재료 금속 포장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석도금강판 시장은 2000년대 이후 공급과잉과 PET 용기 등 경쟁소재의 시장잠식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07년 1분기부터 포스코가 주석도금강판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는 3개 회사가 국내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의 주석도금강판 생산 설비(ETL: Electrolytic Tinning Line, 연간생산능력 25만t)를 2007년 4월 중국으로 이전하여, 합작법인인 '중월포항진황도마구철공업유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포스코의 석도강판사업 중단 이후 국내 주석도금강판 생산비중은 동부제철 38만t, TCC동양 36만t, 신화실업 10만t의 3개사 체제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대미 수출기업은 동부제철과 TCC동양이 해당됩니다.

## V. 미국 산업/기업계의 대응현황

### 1. 미국 산업계 대응현황

분쟁광물규제 법안에 대한 미국의 분야별 산업단체의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동차산업자문위원회 (AIAG: the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

미국 자동차산업자문위원회는 분쟁광물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들이 법적 규제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주 묻는 질문 리스트(FAQ)"를 만들어 기업이 법적 규제사항 준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실사를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2) 항공산업협회 (AIA: the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미국 항공산업협회는 분쟁광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내용과 보고서 요구사항 등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sup>8</sup>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

<sup>8</sup> 항공산업협회: <http://www.aia-aerospace.org>

습니다.

**(3) 세계 금 위원회 (WGC: the World Gold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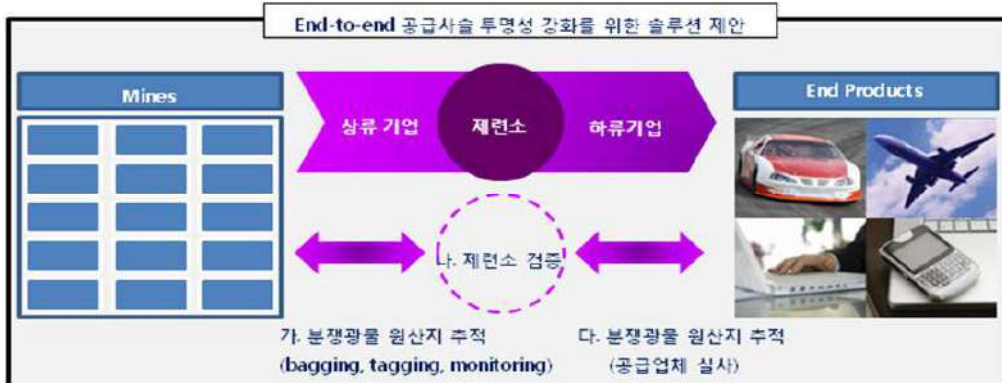
세계 금 위원회는 “The Conflict-Free Gold Standard”<sup>9</sup>라는 기준을 제정하여, 금의 추출에서 정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금 채굴기업에 대한 원산지 추적, 실사 요구사항 충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은 OECD 공급사슬 실사 기준과 Dodd Frank 금융규제 개혁법안 中 section 1502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전자산업시민연대 (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미국 전자산업시민연대는 분쟁광물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기업의 공급사슬에서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톨인 Conflict Free Smelter(CFS)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분쟁광물 구매 정보 수집 및 구매 증명을 위한 실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eSI: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와 공동으로 개발되었으며 OECD의 실사방안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CFS 절차는 광물 제련소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제련소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EICC와 GeSI는 2011년 8월 3일에 기업들이 공급업체의 광물 원산지 조사 시 설문지로 활용이 가능한 “실사 보고 견본(Due Diligence Reporting Template and Dashboard)”<sup>10</sup>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림 V-1] EICC 솔루션**



<sup>9</sup> 자료원: 세계 금 위원회 (<http://www.gold.org>)

<sup>10</sup> 자료원: 전자산업 시민연대 (<http://www.eicc.info/>), 본 보고서 별첨 참조

### 참고) EICC & GeSI의 Conflict-Free Smelter(CFS) program :

CFS 프로그램은 독립된 제3자가 제련소의 구매활동을 평가하고 제련소의 가공 광물이 분쟁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쟁지역 광물의 사용 근절과 동시에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분쟁지역 광물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제련소/정제소 실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CFS의 적용을 통하여 제련소에서 사용한 광물에 대한 원산지 인증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CM보고서 감사시 OECD 실사 가이드의 적합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규제 법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제조기업들이 분쟁광물 사용을 관리하는데 편의를 제공합니다.

CFS 프로그램은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의 제련과 정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주요 제련소는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CFS 실사 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 1단계: 사전 감사활동(7~14일)

EICC 또는 GeSI 구성원이 제련소를 방문하여 제련업자와 분쟁광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사전 감사활동시에는 회사의 제련/정제 작업을 이해하고 원산지 광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제련소의 능력을 파악하여 광물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이해합니다. CFS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제련소는 조기 검토를 수행하고 CFS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감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련소에 CFS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질의 및 응답할 수 있는 CFS 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2단계: 감사활동(제련소 시설에 대한 현장 외부감사(3~5일)를 포함하여 15-45일)

분쟁광물의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분쟁광물에 대한 회사의 정책과 규정을 문서화합니다. 제련소에 공급되는 광물이 분쟁광물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완전한 공급사슬 분석을 수행하고 원산지로 알려진 채굴장소와 일치하는지 평가합니다. 또한 재활용 또는 스크랩으로 분류된 물질이 그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평가합니다.

CFS 실사 프로그램은 4등급으로 광물의 원산지 국가를 정의합니다. 등급수준이 높을수록 비 분쟁광물임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는 까다로워집니다.

**Level 1(others):** 분쟁광물을 운송, 밀수, 수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

**Level 2A(Country of Concern):** 분쟁광물 운송, 밀수,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

**Level 2B(OECD Red Flagged) :** 분쟁광물법안에서 정의된 DRC 인접 9개국

**Level 3(DRC/Conflict) :** 분쟁지역 내에서 잠재적으로 분쟁광물을 공급하는 국가(DRC)

**3단계:** 사후감사활동(필요하다면, 90일까지)

사후 감사활동은 사전 감사수행시 효과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제련소·정제소에 요구되는 절차로, CFS 프로그램 절차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후 감사절차로 시정조치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CFS 감사 검토위원회는 감사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CFS 감사 프로그램 관리자(APM: Audit Program Manager)가 해당 제련소·정제소에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사후감사절차는 인증불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분쟁광물 사용하지 않는 제련소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되기 전 제련소 평가를 재신청할 경우 평가가 내려지기 전까지 인증제련소 리스트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재신청 하지 않을 경우 이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CFS 프로그램에 62개 제련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27개 제련소가 “Conflict Free” 인증을 받았습니다.

[표 V-1] CFS 프로그램 Indicator

Indicator (Definitions)	Tantalum	Gold	Tungsten	Tin
Number of smelter/refiner companies currently active in the CFS process	22	25	5	10
1. Number currently on hold	1	5	0	2
2. Number in pre-nondisclosure agreement (NDA) discussions	0	4	0	0
3. Number in NDA negotiations	3	5	5	0
4. Number with completed NDAs waiting for a pre-audit check	0	0	0	4
5. Number of companies in the quotation process	0	0	0	0
6. Number of audits scheduled	0	0	0	0
7. Number of companies with completed smelter/refiner audit	18	11	0	4
▪ Number of companies with compliant smelters/refiners	14	11	0	2
▪ Number of companies implementing corrective actions after 1st audit	4	0	0	2
▪ Number of completed audits in for Audit Review Committee review	0	2	0	0

(자료 출처: <http://www.conflictreesmelter.org/CFSIndicators.htm>)

### (5) 전자회로연구협회 (IPC : The Institute for Interconnecting and Packaging Electronic Circuits)

전자회로연구협회는 웹사이트<sup>11</sup>를 통하여 분쟁광물 목록과 분쟁광물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광물실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실사문서 및 분쟁광물에 대한 자료교환기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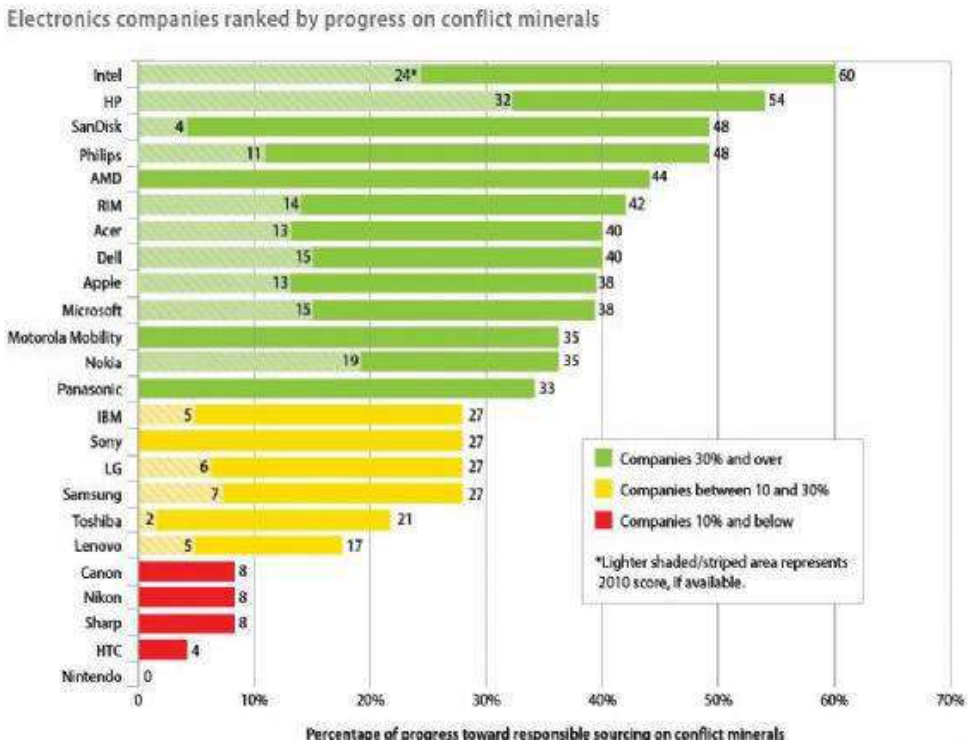
<sup>11</sup> IPC 웹사이트 (<http://www.ipc.org>)

## 2. 미국 기업계 대응현황

### (1) 전자업계 동향

Intel, HP, Apple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분쟁광물 규제가 법으로 제정되기 전부터 “DRC conflict free”를 위한 자체 실사를 시행 하는 등 동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품에 사용되는 금속의 원산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산지가 밝혀진 부품의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6일 북미 아프리카 인권단체인 “이너프 프로젝트”(Enough Project)가 발표한 ‘콩고 평화에 이바지한 기업’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들의 사전 적 대응전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너프 프로젝트에는 IT업체 중 점유율이 높은 24개 업체가 평가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업체는 삼성전자, LG 전자 2개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림 V-2-1] 전자제품 제조업체 별 분쟁광물 규제법안 준수 순위



[표 V-2-1] Enough Project 기업 순위

순위	업체	득점	순위	업체	득점	순위	업체	득점
1	인텔	60	9	애플	38	14	소니	27
2	HP	54	9	마이크로소프트	38	18	도시바	21
3	필립스	48	11	모토로라	35	19	레노버	17
4	샌디스크	48	11	노키아	35	20	캐논	8
5	AMD	44	13	파나소닉	33	20	니콘	8
6	RIM	42	14	IBM	27	20	샤프	8
7	에이서	40	14	LG전자	27	23	HTC	4
7	델	40	14	삼성전자	27	24	닌텐도	0

녹색 A등급, 노란색 B등급, 빨간색 C등급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100점 만점에 60점을 획득한 인텔이, 2위는 54점을 획득한 HP가 차지하였습니다. 필립스, AMD,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분쟁광물을 가려내기 위해 자사의 공급사슬 체계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27점을 획득해 공동 1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공급사슬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아직 자체 감사 및 법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1) Intel사

Inte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급사슬 내의 모든 제련업자가 분쟁광물을 다루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12년에는 Intel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포함되는 탄탈륨이 분쟁지역의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13년에는 4가지 광물 모두에서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는 최초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ntel은 분쟁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않는 공급사슬을 갖추기 위하여 2009년에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광물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공급업체가 분쟁지역 광물 규제준수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및 광물 제련업소를 공급사슬에서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었습니다. Intel은 조사를 통하여 공급사슬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

하였고, 13개 국가, 50개 이상의 제련소를 방문하여 광물과 추출물에 대한 현장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200군데의 1차 공급업체를 조사하여 6,000개 이상의 물품을 확인하였으며, 분쟁광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쟁광물을 제거시키는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의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제련소 단계까지 마이크로프로세서 공급라인의 90%이상을 맵핑 하였으며, 130개 이상의 독립적인 제련소를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Intel은 PPA(International Development Public-Private Alliance for Responsible Minerals Trade)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자금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PPA가 주관하는 “Solutions for Hope”<sup>12</sup>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콩고에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탄탈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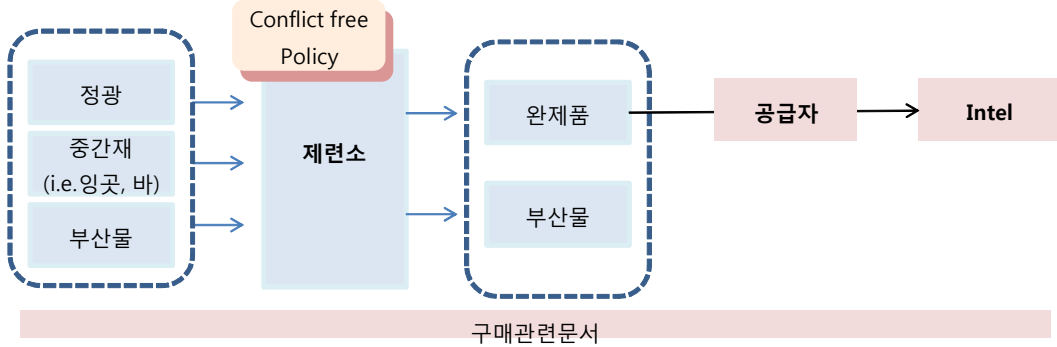
Intel은 분쟁광물의 사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광물의 제련소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Intel은 EICC와 GeSI의 금, 탄탈륨, 주석, 텅스텐에 대한 CFS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제련소의 유입물과 유출물을 균형적(유입=유출)으로 관리 함으로써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쟁 지역 광물이 없는 공급사슬을 구축하는데 제련소가 참여하도록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발전시켰으며 CFS 프로그램을 통한 실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있습니다.

---

**12 Solutions for Hope 프로젝트란**

모토로라솔루션社가 시작한 콩고 내 투명하고 분쟁 없는 지역 및 업체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공급사슬을 구축하고 이를 시험해보는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는 다양한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금속인 탄탈륨의 공급사슬 관리부터 시작했다. 먼저, 논란이 되지 않는 지역의 광산을 확보하고 광산 채굴업자, 제련소, 부품 제조업자, 그리고 모토로라솔루션社로 구성되는 공급사슬을 구축했다. 이는 비교적 간소화된 공급사슬로 많은 무역업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 유입 및 유출의 균형(Mass balance)



- 모든 참고와 재고를 포함
- 설비 포함
- 정확도 ±10%

상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사슬 관리 프로세스에서 유입과 유출이 균형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매관련문서(ex. 공급업체 별 요약 제품 리스트, 제품에 대한 설명, 구매업체 정보, 제품배송정보 등)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2) Apple사

Apple은 10년 전 De Beers(사)가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체계<sup>13</sup>를 통하여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과 같이, 분쟁광물 분야에서 선두적으로 공급사슬 관리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pple은 공급업체들과 함께 Motorola(사)의 "Solution for Hope"와 같은 분쟁광물 공급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Apple은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을 원료로 하는 218개의 공급업체, 175개 제련소에 대하여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사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Apple은 EICC와 GeSI 협력사를 통하여 제련소에게 EICC와 GeSI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였으며, 광물 원산지 확인 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pple은 EICC와 GeSI가 먼저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의 제련소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면, Apple은 그들의 하위공급업체에게 분쟁광물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제련소에서 광물을 구매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자동차업계 동향

분쟁광물규제 법안에 대한 미국 자동차업계의 대응은 자동차산업자문위원회

<sup>13</sup>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체계

정확한 명칭은 '킴벌리 인증 체계(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이다. 분쟁지역의 무기 구입 자금원이 되는 일명 blood diamond (피의 다이아몬드)가 국제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체이다.

(AIAG)를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AIAG는 분쟁광물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하고 세미나와 온라인 회의를 통해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을 높여왔습니다.

법안의 대응 방안으로 AIAG와 *Bosch, Chrysler Group, Ford, Honda* 등 20여개의 기업들은 분쟁광물의 포함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웹 기반의 플랫폼인 *iPCMP (iPoint Conflict Minerals Platform)*을 개발하는 대표 *Working Group*을 설립하였으며 Ford는 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OECD* 실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분쟁광물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1) Ford

Ford는 마이크로소프트, *GE, HP, NGOs,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와 같은 투자자들과 함께 *SEC* 최종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SEC*와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규제 실행의 절차와 적용이 자동차 공급사슬에 미치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OECD, UN*, 분쟁지역 아프리카 정부들이 주관한 국제 포럼에 참가하면서 *NGO* 등 분쟁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치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였습니다.

Ford는 현재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분쟁광물이 사용됐는지 분석하여 원산지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분쟁광물이 제조과정에 포함되었는지만을 모니터링하는 단계이며, 원산지 파악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포드는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면밀히 실행하기 위해 1,400개 이상에 달하는 공급 업체에 *SEC* 규제에 해당하는 4개 광물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OECD*와 *UN*의 분쟁광물 실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실사체계를 구축하여 제련소와 광물 정제소를 정확히 인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Ford는 6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글로벌 1차 공급자에 포함되는 공급업체들과 자동차 산업 *Work Group*을 구성하였으며 포드가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Ford는 6개 글로벌 자동차 업체 부사장과 1차 공급업체 CEO들에게 분쟁광물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는 서한을 전달하여,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1년 1월에는 자동차 산업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원자재 판매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강조해 대기업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11년 9월에는 *SEC* 규제와 관련된 정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 등 공급업체들에 유용한 정보를 홍보하는 자동차 산업 이벤트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Ford는 OECD의 5단계 실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OECD의 실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AIAG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OECD 시험 단계에 참여하였습니다.

[표 V-2-2]

<Ford's Actions to Date>
1단계: 책임 있고 상호기능적인 팀을 구축한다.
2단계: 공급업체에게 제품의 구성내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제품의 구성내역을 기반으로 공급업체의 우선 순위를 지정한다.
3단계: 효과적인 자원조달 정책과 보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포드의 균형 전략을 구축한다.
4단계: AIAG을 통해 Conflict Free Sourcing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5단계: 2013년 정식 SEC 보고서로 예상되는 포드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제출한다.

2) iPCMP (iPoint Conflict Minerals Platform)

AIAG와 iPoint<sup>14</sup>는 Working Group 을 설립하고, 공급사슬 내의 공급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분쟁광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기반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iPCMP(iPoint Conflict Minerals Platform)을 개발했습니다. Working Group에는 AIAG의 OEM기업들과, Bosch, Chrysler Group, Ford, Honda 등 20 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였습니다.

AIAG와 협력 하에 개발된 iPCMP는 iPoint의 수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공급사슬 내에서 제품과 관련된 환경기준 준수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iPCMP는 전체 공급사슬에 걸쳐 적용 할 수 있는 웹기반 솔루션을 구축하여 분쟁광물을 추적하는 노력과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iPCMP는 EICC-GeSI 가 마련한 주요 분쟁광물 보고기준을 바탕으로 보고과정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또한 iPCMP의 통합 유효성 체크, 통계, 온라인

<sup>14</sup> iPoint

iPoint는 제품의 공급사슬 전체를 관리, 추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품환경규정과 지속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이들은 공급사슬 전체가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는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이 쉽게 제품 구성 요소를 최적화 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iPoint는 품질, 물류, 유통, 환경규정,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의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하며 170개 이상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장과 같은 기능들은 *Dodd -Frank*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iPCMP*는 기업이 모든 공급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쟁광물 수급을 효율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모델을 제공합니다.

*iPCMP*는 *Reports, Online Storage, Customer requests, Supplier requests*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ports* 부문에서는 보고서 작성, 저장, 롤업 및 유효성 검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Online Storage* 부문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통합하여 정교화된 시스템의 폴더구조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공급사슬의 많은 양의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고 실사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ustomer requests* 부문에서는 고객의 요청에 대한 응답 및 관리를 하며, *Supplier requests* 부문에서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분쟁광물 질의응답을 공급업체에게 요청하고, 공급업체는 다시 *sub* 공급업체에게 요청을 하여 공급사슬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iPCMP* 는 2013년까지 하위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고급 사용자 권한관리와 추가적인 사용자 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를 제공하고 *XML*파일의 불러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 **3. 분쟁광물 규제법안 대응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효익**

미국 제조업협회(*MIAC: Manufacturing Industry Association Comments*)와 미국 대학연합(*University Group*)에서는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대응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습니다.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표 V-3-1] 단체별 경제적 비용 예측치

제조업협회의 예측치		대학연합의 예측치	
영향을 받는 회사 수	5,994개	영향을 받는 회사 수	5,994개 (대기업 1,678개 중소기업 4,316개)
최초공급업체의 평균 수	2,000개	최초공급업체의 평균 수	1,060개
실사 비용 (공급업체 포함)	\$1,198,800,000	실사 비용	\$26,013,000
IT시스템 수정 비용	\$5,994,000,000	IT시스템 수정 비용	\$2,562,780,000
분쟁광물보고서 감사 비용	\$450,000,000	분쟁광물보고서 감사비용	\$207,000,000
공급업체 정보 입증비용	\$299,700,000	공급업체 실사 비용	\$5,144,213,000
중소 공급업체 실사 비용	\$1,390,000,000		
합계	<b>\$9,332,500,000</b>	합계	<b>\$7,940,006,000</b>

(자료원: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7 CFR Parts 240 and 249b, Release No. 34-67716)

제조업협회와 대학연합의 경제적 비용 예측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각각의 단체에서 사용한 가정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단체 모두 영향을 받는 총 회사의 수를 5,994개로 동일하게 가정하였지만, 대학연합은 회사의 규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사비용과 IT시스템 변경 비용, 분쟁광물 보고서 감사비용도 각각 회사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협회는 1차 공급업체의 수를 평균 2,000개로 예측하였지만, 대학연합은 제조업협회 의견의 53%인 1,060개로 가정하였습니다. 제조업협회는 실사비용 예측시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계산하였으며, 대학연합은 공급업체를 분리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즉, 제조업협회는 공급업체의 신뢰성 있는 정보와 법적 의무 실행을 위한 입증비용을 추가로 고려하였지만, 대학연합에서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분쟁광물 규제법안의 준수에 따라 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KPMG US의 설문조사에서는 500개 이상 다양한 기관의 대표들에게 분쟁광물에 대한 공급사슬 실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 만이 “전혀 없다”고 답을 하였으며, 단순히 보고에 대한 부담으로 간주하였지만, 나머지의 다수 기업들은 공급사슬 실사를 통하여 잠재적으로 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잠재적 효익으로는 공급사슬 단순화와 합리화(6%), 비용 절감(14%), 고객관계 개선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8%)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참가자들은 이 법안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근로기준, 공중보건, 안전, 윤리 등의 사회적 책임 이슈에 대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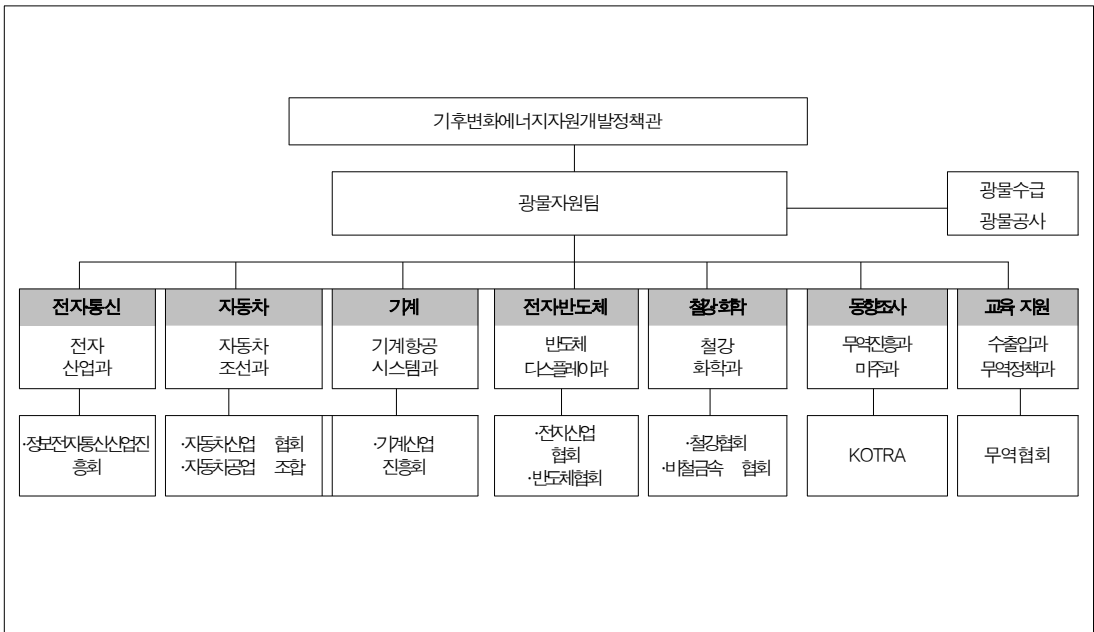
## VI. 한국 산업 및 기업의 준비현황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1. 한국 산업의 준비현황

지식경제부에서는 2012년 3월 미국 분쟁 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하였으며, 분쟁광물규제 대응반을 중심으로 미국의 규제 시행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공사는 규제대상 광물의 대체 수입선을 모색 및 안내하고 있으며, KOTRA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협회와 업계 대표 단체 등은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하여 규제 관련 정보와 동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CEO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등의 공동 대응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표 VI-1-1] 지식경제부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현재까지의 국내 각 산업기관별 분쟁광물규제 법안에 대한 준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자산업 공급사슬 내 관련업계간 회의를 추진하여 제품(완제품, 부품) 및 유통(제련소)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분쟁광물 대응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美 전자산업시민연대(EICC) 템플릿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규제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2)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해외 납품업체에 원산지 증명서,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 각서를 요청하고 규제국가 외의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회원사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3) 자동차 부품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차원에서 본 규제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관련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대다수의 부품제조업체들이 원산지 파악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4) 비철금속 (비철금속협회)

런던 금시장연합회(LBMA: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및 EICC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실사절차를 기반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실사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Gold Good Delivery List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에 분쟁광물을 배제하는 내용의 Responsible Gold Guidance<sup>15</sup>를 따르기로 런던금시장연합회에 회신하였습니다.

상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각 산업기관별 분쟁광물규제 법안에 대한 준비현황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미국의 산업단체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sup>15</sup> Responsible Gold Guidance:

런던귀금속연합회가 정하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금을 거래하는 기업들의 리스트

## 2.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분쟁광물 규제법안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절차는 크게 법안 준수를 위한 내부 조직 구축, 정책수립과 공급 사슬 맵핑의 주요한 절차를 포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세부적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표 VI-2-1] 분쟁광물 규제법안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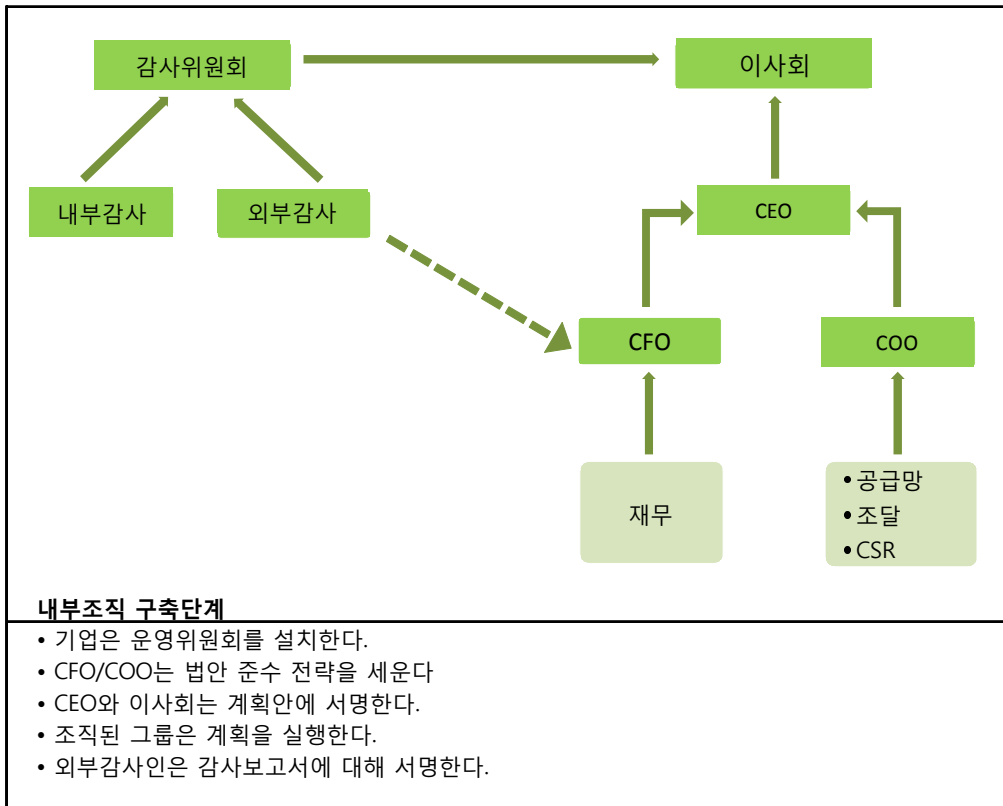
1 전략 개발, OECD 가이드라인 사용, 정책 개발	2 공급자의 3TG 광물 식별, RCOI 및 실사 수행	3 프로세스 제도화	4 SEC 공시 준비
1.1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할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2.1 3TG가 포함된 제품 목록 및 공급업자 맵핑	3.1 표준운영절차(SOP)개발	4.1 각 단계에서 생성된 문서 등을 취합하여 분쟁광물 보고서를 작성
1.2 "제조계약," "기능에 필요한"과 같은 용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	2.2 공급업체와 커뮤니케이션 방안 개발	3.2 정책 프레임 워크(즉, 정책, 통제 및 시스템을 개발	4.2 영장 받은 제품과 사용된 시설에 대한 정보 공개
1.3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2.3 공급업체에 교육 자료를 배포 및 교육 실시	3.3 표준운영절차를 수행하고 사업단위 확인작업을 수행	4.3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목적으로 대응가능
1.4 OECD 가이드 라인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	2.4 공급 업체 설문 조사를 실행하고 RCOI에 대한 결과를 분석	3.4 사후 검토업무 수행	4.4 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급업체 계약 관리
1.5 분쟁광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년, 2년, 4년의 자세한 계획 개발	2.5 답변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공급업체에 추가확인	3.5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취합	
1.6 공급 업체의 GAP Analysis 및 위험을 평가하는 계획 개발	2.6 필요한 경우 분쟁광물 미사용에 대한 추가 실사 수행	3.6 테스트 절차 중 확인된 결함에 대한 개선 방안	
1.7 분쟁광물 대응방안을 위한 기준을 정의		3.7 개선 기회를 식별하고 우선 순위 결정	
		3.8 실사 과정을 설명하는 프로젝트 계획 및 CM 프로그램 로드맵을 업데이트	
		3.9 표준운영절차 업데이트	

상기와 같은 절차들은 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및 실행되어야 하며, 직접 공시의무가 있는 미국 상장기업과 이러한 직접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에 납품하는 공급업체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 (1) 내부조직 구축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의 시작은 먼저 기업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적 팀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SEC에 공시되는 보고서상 분쟁광물의 원산지과 관련된 공시사항은 기업차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새롭게 구축되는 내부적 팀에는 CEO와 CFO 등의 경영진 이외에도 COO, 법무팀, 재무팀, 내부감사 및 공급업자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림 VI-2-1] 내부조직(예시)



(2) 분쟁광물 조달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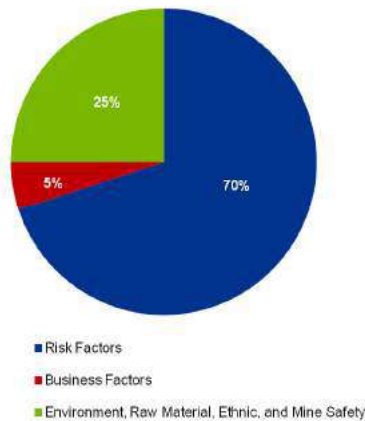
SEC가 2012년 8월 22일에 발표한 분쟁광물규제법 시행령에서는 공시의무 기업의 분쟁광물 조달과 관련된 정책은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 절차의 일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공시의무기업의 SD보고서에 이러한 정책은 공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의 실사가이드에서도 위험 및 분쟁지역으로 부터의 광물을 조달하는 공급사슬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공급업체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어떠한 실사절차를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과 기업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 조달하는 정책, 공급업체 요구사항과 도드-프랭크 규제법안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쟁광물 최종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부터 많은 미국 상장기업들은 2010년 12월에 발표된 시행령초안을 근거로 분쟁광물정책을 수립하였고, 연차보고서와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서 KPMG가 조사한 결과 63개의 기업이 연차보고서에 분쟁광물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었으며, 이 중 53개 회사가 미국상장기업(10K 공시)이었고, 6개는 외국상장기업(20F 공시)이었습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이 분쟁광물에 관한 내용을 2011년 연차보고서상 “Risk Factors”부분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림 VI-2-2] 분쟁광물 내용의 연차보고서 기술**



(자료원: *Company annual reports, 10-K and 20-F, Edger Online, March 2012*)

따라서 한국기업들도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하위 공급업체에 전달하여 분쟁광물 조달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미국에 상장된 한국기업은 SD보고서를 통해서 SEC에 공시되어야 하고, 미국 상장기업에 납품하는 한국기업은 거래처인 미국 상장기업으로부터의 현장 실사 및 확인서 요청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3) 공급사슬 맵핑과 실사(Due Diligence)**

규제 법안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미국의 Intel과 Apple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사슬 전반을 정확하게 맵핑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 확신이 아닌 합리적 확신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별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을 분석하여 통제대상 원·부자재를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의 제품군을 선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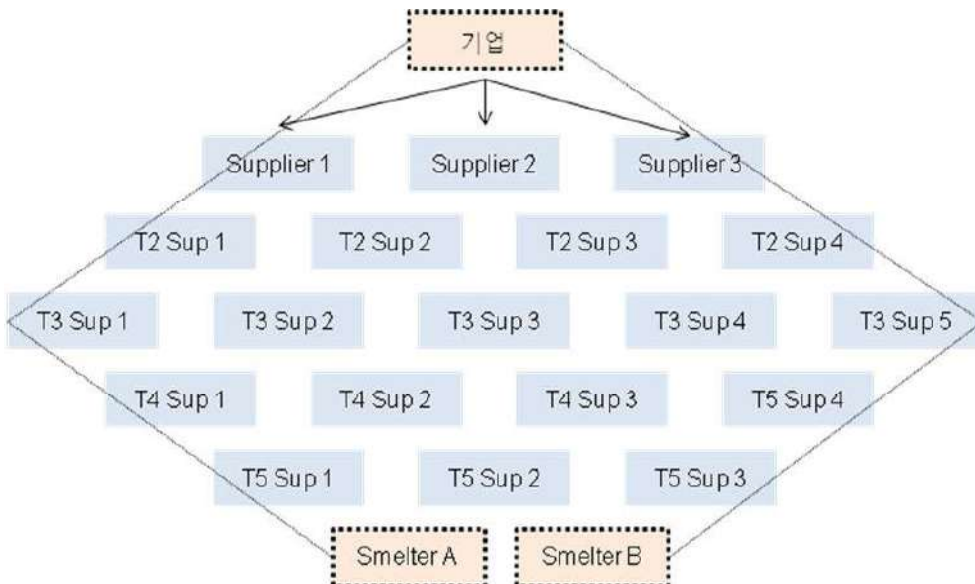
정하여 *Pilot test*를 수행한 후, 점차 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접근방법이 고려 가능합니다.

[표 VI-2-3] Pilot 접근법과 전사적 접근법 비교

분류	Pilot 접근법	전사적 접근법
내용	초기 조사를 위하여 하나의 제품군 또는 사업부를 선택하는 접근법	모든 제품의 공급사슬을 한번에 고려하는 접근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속적으로 더 큰 규모로 돌아올 수 있는 프로세스의 개발 용이</li> <li>• 장애요인 조기식별이 가능</li> <li>• 적은 자원이 소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에 대한 전사적 포커스</li> <li>• 전체 공급사슬 맵핑을 위한 빠른 방법</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재적 구축 시간이 추가로 요구</li> </ul>	파일럿 접근방식에 비해 많은 자원이 요구됨

적합한 기업	다수의 제품과 공급업자가 있는 기업	소수의 규칙적인 제품 및 공급업자가 있는 기업
--------	---------------------	---------------------------

[그림 VI-2-3] 공급사슬 맵핑(예시)



또한 최종시행령에서 SEC는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실사방법으로 미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실사방식을 충족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특히 OECD의 실사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50여개 업체들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이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참고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표 VI-2-3]**

분쟁광물 공급사슬 실사를 위한 OECD요구사항
1. 확고한 회사의 관리시스템 구축
2. 공급사슬의 위험 파악 및 평가
3. 인지된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및 실행
4. 독립된 민감부문 감사
5. 공급사슬 실사보고

분쟁광물규제법 시행령에서 합리적 수준의 원산지 확인은 공급업체로부터 확인서를 입수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원산지 확인의 요구사항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나, 공시의무기업은 동 확인서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들을 고려하여 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분쟁광물을 가공하는 제련소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사를 받고 인정된 산업단체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제련소로부터의 확인서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광물의 사용은 해당기업이 규제 대상 광물구입을 미국 내 또는 국제적으로 “Conflict-Free”로 인증된 제련소<sup>16</sup>를 통하여 구입하거나 공급업자들에게 인증된 제련소를 사용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분쟁광물 사용을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공급사슬 내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분쟁광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서 신뢰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설문서 등의 형태로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ICC에서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템플릿을 개발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으며, 이와 같은 미국 산업단체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웹플릿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sup>16</sup> EICC홈페이지(<http://www.conflictreesmelter.org>)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는 동 리스트를 [첨부2]에 기술하였습니다.



### 3. OECD 공급사슬 실사를 위한 5단계 프레임 워크

OECD 공급사슬 실사 프레임에 따르면, 기업은 그들의 공급업자 선정에 있어서 다음 다섯 단계의 실사 절차를 수행하여 공급사슬 내의 분쟁광물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쟁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확고한 회사의 관리시스템 구축

- A) 회사는 해당광물이 분쟁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 정책을 구축하고, 공급업체와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 정책에는 실사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B) 내부적으로 실사 체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C) 공급사슬을 관리하고 투명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료의 보관 및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 D) 공급업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사슬 내 원산지 정보는 공급업체와의 접촉과 합의 등을 통하여 추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실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능력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 E) 회사 수준에서 또는 산업 수준에서 메커니즘에 따른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2) 공급사슬의 위험 파악 및 평가

- A) 공급사슬 내의 위험 요소를 확인합니다.
- B) 공급사슬 관리 정책 기준에 비추어 부정적인 위험요소를 평가합니다.

#### (3) 인지도된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및 실행

- A) 회사의 경영진에게 공급사슬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 B)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채택해야 하며, 위험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위험 완화 노력을 통해 거래를 유지
  - ii) 지속적인 위험 완화를 추구하면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지
  - iii) 허용되지 않는 위험을 완화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해당 공급업체와 거래 중지

올바른 전략을 위하여 기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쟁지역 또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급사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들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어떠한 공급업체가 인지된 위험을 완화하는데 가장 적극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를 유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기업이 위험 완화 활동을 추구하는 경우, 공급 업체 및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지역 및 중앙 정부기관, 분쟁광물과 관련된 국제 및 시민 사회 단체들과 영향을 받는 제3자들이 있습니다.

- C) 기업은 위험관리 계획과 모니터링 결과, 위험완화 활동 전략을 구축하고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분쟁지역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은 정부 기관, 상위기업, 국제 및 시민 사회 단체와 함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D)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과 위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4. 독립된 민간부문 감사**

회사는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실사 결과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제3자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독립적이고 제도화된 메커니즘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5. 공급사슬 실사 보고서**

회사는 공개적으로 공급사슬 실사정책 및 수행방법에 대하여 보고해야 하며 지속 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분쟁광물의 공급사슬 실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VII. 결론

분쟁광물 규제법안은 미국의 기업규제 패턴이 정보공개 의무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분쟁광물의 사용금지를 명시하기보다는 더 강력한 정보공개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사용 억제 노력을 통한 규제법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과거 비교 우위에 입각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익을 창출하는 “경제인” 모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후 무역에 참가하는 “책임감 있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VII-1] 분쟁광물규제로 인한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분쟁광물 법안의 규제 준수에 따라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와 프로그램 구축 등 해당 기업에게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면도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과 규제준수를 통하여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미국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 준수로 인하여 초기의 비용이 높게 발생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기업에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급사슬에 대한 세부적 실사를 통한 수많은 공급 업체의 공급사슬 상호 맵핑으로 더욱 투명한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모든 기업이 공급사슬 단순화와 합리화, 비용 절감, 고객관계 개선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의 준수는 더욱 용이해 질 것이며, 기업의 성과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02년 기업들이 *Sarbanes-Oxley Act*<sup>17</sup> 법안 준수를 위하여 많은 비용이 지

<sup>17</sup> Sarbanes-Oxley Act

2002년 미국에서 공개 기업의 재무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기업 회계개혁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법은 엔론(Enron)사와 월드콤(WorldCom)사의 회계 부정 사건 이후 재무 조작

출되었지만,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가상승과 차입비용 완화, 기업투명성 증가를 가져왔던 것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美 분쟁광물규제 법안의 최초 보고의무기간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에 대한 보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한국수출 기업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실사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 실사는 미국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기지를 가진 미국 SEC 상장사에 대한 분쟁광물 사용여부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주요 기업체들이 이미 빠른 대응을 보이는 것과 같이 한국기업들도 OECD 분쟁광물 실사지침을 바탕으로 규제 준수작업을 시급히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분쟁광물 원산지 추적은 매우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이나 EICC-GeSI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자체 실사 실행 프로그램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과 회계 스캔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명칭은 법안을 처음 발의한 메릴랜드 주 민주당 상원 의원 폴 사베인즈와 오하이오 주 공화당 하원 의원 마이클 옥슬리,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SOX', '사브옥스', 'SOA'라고도 불린다.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첨부 1) SD Report와 분쟁광물보고서 기재사항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워싱턴 DC. 20549

SD Form

특정화된 공시 보고서

---

명시된 기업의 정확한 명칭

---

(회사나 단체의 주(state)  
종업원 사번)  
또는 다른 관할구역)

(위원회 서류 번호)

(IRS

---

(주요 행정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연락할 사람의 이름과 지역코드를 포함한 전화번호)

이 서식의 제출처와 이 서식과 관련된 법률과 적용되는 기간에 표시하십시오 :

증권거래법의 규정 13p-1 (17 CFR 240. 13p-1)에 따라 보고기간은 \_\_\_\_\_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작성 방법

### A. SD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이 서식은 증권거래법의 규정 13p-1 (17 CFR 240. 13p-1)에 따르는 보고서에 사용되어야 한다.

### B. 보고될 정보와 보고서 작성 시점

1. 규정 13p-1에 따른 제출 서식. 본 서식의 보고서는 회사의 가장 최근 역년의 마지막 날 이후의 5월 31일까지 EDGAR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위원회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 A. 등록된 투자회사에의 적용 불가능

SD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은 1940년 투자회사법의 규정 30d-1 (17 CFR 270.30d-1)의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는 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보고서의 준비

이 서식은 법 12b-12 (17 CFR 240.12b-12)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보고서의 준비를 위한 가이드로만 사용된다. 규정 12b-13 (17 CFR 240.12b-13)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시, 적용 가능한 항목의 번호와 표제 (그 항목의 문구는 생략하고)를 기재하여야 한다. 보고서에서 답변이 필요 없는 모든 항목은 생략되며, 해당 참조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모든 지침 역시 생략하여야 한다.

### C. 일반적인 규정과 규칙의 적용

법 (17 CFR Part 240)의 일반적인 규정과 규칙은 어떤 서식의 보고서든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일반적 요구사항은 이 서식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 D. 보고서의 서명과 제출

보고서는 반드시 기업을 대표하는 임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첨부 2) EICC-GeSI의 CFS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제련소 리스트

구분	Tantalum	Gold	Tungsten	Tin
실사 완료된 제련소	18	11	0	4
인증된 제련소	14	11	0	2

탄탈륨 (Tantalum)

제련소 명	제련소 위치(유효일자)
1. Exotech Inc.	a. Pompano Beach, Florida, USA (November 28 – November 29, 2011)
2. F & X	a. Jiangmen, Guangdong, China (February 22 – February 24, 2012)
3. Gannon & Scott	a. Phoenix, Arizona, USA (May 4, 2011)
4. Global Advanced Metals (formerly known as Cabot Supermetals)	a. Boyertown, Pennsylvania, USA (September 7 – 8, 2011)
	b. Aizu, Japan (September 28 – 29, 2011)
5. H.C. Starck GmbH	a. Newton, Massachusetts, USA (February 27 – 28, 2012)
	b. Goslar, Germany (January 30 – February 1, 2012)
	c. Laufenberg, Germany (February 3 – 22, 2012)
	d. Mito, Japan (February 20, 2012)
6. Hi-Temp	e. Ma Ta Phut, Thailand (February 23, 2012)
	a. Yaphank, New York, USA (June 14, 2012)
7. Mitsui Mining & Smelting	a. Tosen, Fukuoka, Japan (November 18, 2011)
8. Ningxia (OTIC)	a. Shizuishan City, P.R. China (July 30 – August 2, 2012)
9. Plansee	a. Reutte, Austria (February 28 – March 03, 2011)
	b. Liezen, Austria (March 02, 2011)
10. RFH	a. Nanjing City, P.R. China (February 27 – March 2, 2012)
11. Solikamsk Metal Works	a. Solikamsk, Russia (July 18 – 22, 2011)
12. Telex	a. Croydon, Pennsylvania, USA (December 13 – 14, 2011)
13. Ulba	a. Ust-Kamenogorsk, Republic of Kazakhstan (June 28 – July 01, 2011)
	b. Zhuzhou, Hunan, China (August 29 – August 31, 2011)
14. Zhuzhou (ZCCC)	b. Zhuzhou, Hunan, China (August 29 – August 31, 2011)

(자료원: <http://www.conflictfreesmelter.org/cfslist.htm>)

**PART. 4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

**텅스텐 (Tungsten)**

- 실사 완료된 제련소 없음.

**주석 (Tin)**

- 인증된 제련소 리스트 미공시됨.

**금 (Gold)**



제련소 명	제련소 위치(유효일자)
1. Asahi Pretec Corporation	a. Saitama Factory, Saitama Prefecture, Japan (May 24, 2012)
	b. Amagasaki Factory, Hyogo Prefecture, Japan (May 25, 2012)
	c. Technical Research Center, Hyogo Prefecture, Japan (June 5, 2012)
	d. Ehime Factory, Ehime Prefecture, Japan (June 6, 2012)
2. DOWA	a. Kosaka Smelting & Refining Co., Ltd., Japan (August 8, 2012)
	b. DOWA Metals & Mining Co., Ltd., Tokyo, Japan (August 9, 2012)
3. Matsuda Sangyo	a. Iruma Factory, Saitama Prefecture, Japan (May 22 -24, 2012)
	b. Iruma Second Factory, Saitama Prefecture, Japan (May 22 -24, 2012)
	c. Musashi Factory, Saitama Prefecture, Japan (May 22 -24, 2012)
	d. R&D Center, Saitama Prefecture, Japan (May 22 -24, 2012)
4. Metalor USA Refining Corporation	a. North Attleboro, Ohio, USA (April 17 - April 19, 2012)
5. Metalor Technologies SA	a. Neuchâtel, Switzerland (May 8 - May 10, 2012)
6. Metalor Technologies Hong Kong	a. Hong Kong, China (May 17 - May 18, 2012)
7. Nihon Material Co. LTD	a. Chiba Prefecture, Japan (August 20 - August 21, 2012)
8. Ohio Precious Metals, LLC.	a. Jackson, Ohio, USA (April 26 - April 27, 2012)
9. Perth Mint Refinery	a. Cloverdale Western Australia (April 4, 2012)
10. Royal Canadian Mint	a. Ottawa, Ontario, Canada (February 17, 2012)
11. Tanaka Kikinzoku Kogyo K.K.	a. Kanagawa, Japan (April 12 - April 13, 2012)

(자료원: <http://www.conflictfreemelter.org/cfslist.htm>)



## II. 미국 분쟁광물 규제법안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 첨부 3) EICC 분쟁광물 사용보고 템플릿

  <p style="font-size: small;"> <b>Select Language Preference Here:</b>              報告書言語の選択:              从报告语言中选择语言:              報告書言語をここから選択してください:  <b>Sélectionner la langue préférée ici:</b>  <b>Selección Preferencia de idioma Aquí:</b>  <b>Wählen sie hier die Sprache:</b>  <b>Selecione el lenguaje de preferencia aquí:</b> </p>	<h3 style="margin: 0;">분쟁광물 사용보고 템플릿</h3>										
한국어 Korean	Revision 2 August 29th 2012										
이 문서는 제3자에 사용되는 주석, 판발품, 평스텔, 금의 구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a href="#">Link to Terms &amp; Conditions</a>											
필수 기입 항목은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템플릿에 기록되는 정보는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일년 주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은 귀사의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업 정보											
기업명 (*): 선인범위 (*): 선인범위 설명란: 사업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 담당자 직위: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전화번호: 원료일 (*):											
위에 명시한 선인범위를 바탕으로 다음 1-6번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다음의 금속 중 귀사가 제조하는 제품이거나 제조하기로 계약한 제품의 생산과 기능에 필요한 금속이 있습니까?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이 질문은 안표됩니다.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답변</th> <th style="width: 40%;">추가 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발품 (Ta)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석 (Sn)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Au)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스텔 (W) (*)</td> <td></td> </tr> </table>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2) 1)의 질문에서 답한 금속 중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 국가가 원산지인 금속이 있습니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답변</th> <th style="width: 40%;">추가 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발품 (Ta)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석 (Sn)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Au)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스텔 (W) (*)</td> <td></td> </tr> </table>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3) 1)의 질문에서 답한 금속 중 재활용이나 스크랩된 금속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 있습니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답변</th> <th style="width: 40%;">추가 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발품 (Ta)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석 (Sn)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Au)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스텔 (W) (*)</td> <td></td> </tr> </table>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4) 귀사의 모든 협력사로부터 분쟁 광물 사용보고 템플릿을 제출 받았습니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답변</th> <th style="width: 40%;">추가 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발품 (Ta)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석 (Sn)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Au)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스텔 (W) (*)</td> <td></td> </tr> </table>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5) 각 광물에 대해 귀사와 귀사의 협력사는 위에 명시한 선인범위 제품에 사용되는 금속을 공급하는 모든 제련소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답변</th> <th style="width: 40%;">추가 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발품 (Ta)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석 (Sn)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Au)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스텔 (W) (*)</td> <td></td> </tr> </table>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6) 귀사와 귀사의 협력사가 사용하는 금속을 공급하는 제련소는 "EICC-GeSI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Conflict Free Smelter)" 프로그램에 준수하며 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답변</th> <th style="width: 40%;">추가 내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판발품 (Ta)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석 (Sn)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금 (Au) (*)</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스텔 (W) (*)</td> <td></td> </tr> </table>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답변	추가 내용										
판발품 (Ta) (*)											
주석 (Sn) (*)											
금 (Au) (*)											
평스텔 (W) (*)											

**PART. 4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

회사 차원에서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문제	답변	추가 내용 및 첨부 파일
A. 귀사는 분쟁지역광물 사용 금지를 위한 구매 관련 정책이 있습니까? (*)		
B.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C. 귀사의 1차 협력사에게 분쟁지역 광물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D. 귀사의 협력사에게 "EICC-GeSI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프로그램(Conflict Free Smelter)"에서 인증한 제련소로부터 광물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		
E. 귀사의 협력사들의 분쟁광물 사용 금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매 실사(Due Dilligence)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F. 귀사의 모든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사용보고 템플릿"을 작성하도록 요청합니까? (*)		
G. 귀사의 협력사에게 제련소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		
H. 귀사의 협력사들로부터 받은 분쟁광물 사용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I. 귀사의 광물질 정보 확인 프로세스는 개선 조치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		
J. 귀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분쟁광물 사용 공개조건 사항에 적용됩니까? (*)		

© 2011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Incorporated and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All rights reserved.

(자료원: <http://www.conflictreesmelter.org>)